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5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임종득 · 김태규 · 김기현
윤한홍 · 김예지 · 박성훈
김용태 · 서천호 · 김승수
김미애 · 김위상 · 박정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가 단순·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인 · 구직 정보수집) (생략) <u><신 설></u>	제5조(구인 · 구직 정보수집)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구인 · 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 · 기술 · 자격 · 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